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3. 6.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2월 22일

나. 발 의 자 : 권영식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3.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영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제정에 따라 법조항 변경(안 제1조, 안 제4조)
- 허위 등으로 수리비용 청구시 조치방법 신설(안 제7조)
- 보장구의 안전조치 조항 신설(안 제8조)
- 휠체어 등의 수리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규를 변경하고 휠체어 등 이동성 보장구 수리의 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조항을 변경함.
 -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 반환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함.
 -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 지원함.
 - 휠체어 등의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
----------	-----

발의연월일 : 2017년 2월 일

발 의 자 : 권영식 의원 외 8명

1. 제안이유

장애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안전조치, 수리소의 협약의 해지, 지도감독의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이동용 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제정에 따라 법조항 변경(안 제1조, 안 제4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조항 변경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 청구시 조치방법 신설(안 제7조)

다. 보장구의 안전조치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휠체어 등의 수리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9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2. 7. ~ 2. 13.)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신설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복지법</u>」(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에 따라</p> <p>-----</p> <p>-----</p> <p>-----</p> <p>-----</p> <p>-----</p> <p>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u>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p> <p>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